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

원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원고 재단법인

피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

종로세무서장

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

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5누2799 판결

판 결 선 고 2006. 4. 27.

주 문

각 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.

이 유

1.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

기록에 의하면,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

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.

## 2.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

## 가. 상고이유 제1점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A가 B, C로부터 그들의 재산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재산을 관리하여 오다가 1989. 12. 1. D로부터 주식회사 E사의 주식 150,000주를 증여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B, C에게 중여하고 다만 F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B, C를 대리하여 위 주식을 원고에게 출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## 나. 상고이유 제2점

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(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),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바,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.

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F 외 3인 명의 주식에 대하여 A를 증여자로 보고 한 증

여세 부과처분과 B, C을 증여자로 보고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## 3. 결론

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양승태	
주 심	대법관	강신욱	
	대법관	고현철	
	대법관	김지형	